

가정상담 12

2016

통권 400호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지난 11월 24일 본소의 2016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개최되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4면)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42회 “나, 너, 그리고 우리 - 행복찾기 부부캠프”가 진행 되었다. (관련내용 15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I | 가정상담 400호
- 10 • 특집 I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II ⑥
- 15 • 가정폭력상담실
- 19 • 가정상담 400호 특집 <가정상담> 표지
- 23 • 특집 I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8강
- 29 • 인터넷 상담
- 30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32 • 결혼과 인생(166) 영화 이야기
 브루클린 _ 김용언
- 34 • 상담소 소식
- 36 • 지부소식
- 37 • 상담통계
- 38 • 좋은 책
 법의 도덕성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가정상담〉 400호에 부쳐

열린 세상으로 향한 상담소의 소통을 위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담소는 이번 12월에 상담소 기관지 〈가정상담〉 통권 4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 10월 5일자로 발행된 〈가정상담〉 창간호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4면으로 발행된 소박한 신문입니다. 여성문제 연구원의 방 한 칸을 빌어 시작했던 상담소의 시작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창립 15주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담소는 활동에 관한 이런 저런 소식들을 상담소 내외로 널리 알리는 소통의 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십여 년 가까이 일 년에 한 번 발행했던 〈가정상담〉은 36면으로 매월 발행하는 명실상부한 상담소의 기관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새해부터는 소송구조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가정폭력상담, 시민법교육 등의 활발한 활동을 더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4면을 증면 한 40면 분량으로 매월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올 한 해는 ‘창립 60주년의 해’ 로써 우리 사회와 가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법률구조 사업을 중심으로 상담소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돌아보며 백년, 이백년 대계의 든든한 주춧돌로 삼겠다는 각오로 내실 있게 보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립 60주년의 해’ 를 마무리하며 〈가정상담〉 통권 4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이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상담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0년 역사를 통해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으로 사회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되었지만,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상담소가 먼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상담소를 찾아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부부캠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 많은 분들은 좀 더 일찍 상담소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좀 더 일찍 알게 되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상담소가 좀 더 사회와 널리 소통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구조 사업을 중심으로 상담소에서 해 온 일을 가감 없이 알리고, 가족법개정 등과 관련하여 상담소가 나아갈 방향을 두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며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변민하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이들과 더불어 상담소가 더욱 발전함으로써 우리 사회 법률복지의 기반이 더 튼튼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뜻을 가지고 구성원 전체가 헌신과 열정을 다해 상담소 60주년 역사를 만들었고, 이와 발맞추어 소박한 첫 걸음을 내딛은 <가정상담>이 어느새 통권 4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이야말로 세상과 소통하는 상담소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손 편지 대신 이 메일이, 사전보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기능이 그리고 종이책 보다 웹진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요한 소통과 지식전달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 또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사이버 세상에 홈페이지를 열어 소식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소식을 웹진에 담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매체가 지닌 특별함과 장점을 살려 앞으로도 상담소와 함께 상담소의 기관지 <가정상담>은 그 역사를 함께 해 갈 것입니다.

상담소의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답게 <가정상담>을 여성을 위한 일간지로 만들고, 여성 전용 은행도 열겠다는 큰 꿈을 가지셨습니다.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가 요원해 보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법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그리고 가정의 민주화를 구현해 왔습니다. 상담소와 상담소 기관지 <가정상담>의 역할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상담> 400호 발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면서, 상담소는 지금까지처럼 가정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축고 지치는 연말입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상담〉 통권 400호

〈가정상담〉이 지나온 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지난 1971년 기관지 〈가정상담〉을 발행하였다.

〈가정상담〉은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상담소 각 부문의 사업내용을 전하는 소식지이자 상담을 통해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 국내외 법률구조 사업의 현황,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파하는 상담소의 기관지로 충실한 역할을 다해왔으며, 상담소 창립 60주년 12월에 통권 4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 1971년 10월 5일 상담소 창립 15년 만에 연간 형태로 창간호 발행
- 1978년 8호까지 발간
- 1979년 연 2회 발간
- 1980년 연 3회 발간
- 1981년 문공부에 정기 간행물 등록, 격월간으로 발간, 타블로이드판 4면
원곡 김기승 선생의 친필 제호 사용
편집위원회 구성 - 한국일보 장명수 기자, 동아일보 지영선 기자, 중앙일보 김징자 기자, 서울신문 조남진 기자 등 상담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간지 여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가정상담〉 제작 자원 봉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1년까지 모두 12명의 각 언론사 여기자들이 〈가정상담〉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
- 1984년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월 5천부씩 발행
- 1986년 월간으로 발행, 월간 정기간행물로 등록, 판형과

체제를 정비하여 국배판 16면으로 발행하는 한편 소식지에서 교육계몽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월 1만부 발행으로 확장하여 보다 많은 여성과 유관단체에 소식과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 1999년 1월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법인 상담소의 기관지로서 성격을 살리면서 2도 인쇄를 시작하였다. 늘어난 수요에 부응하여 9월부터 월 12,000부를 발행하였다.
- 2000년 4월 통권 200호를 맞아 지면을 혁신하며 20면으로 증면하였다.
- 2006년 1월 상담소 사업의 확장과 활성화에 맞추어 24면으로 증면하였다.
- 2008년 8월 상담소 창립 52주년의 해, 발간 37년을 맞아 통권 300호를 발행하였다. 경우에 따라 28면, 32면 발행도 시도되었다.
- 2009년 1월 200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을 기념하여 정희성 시인이 자필로 써서 기증한 축시 '겨자꽃 핀 봄날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새로운 반세기를 위하여'에서 발췌하여 새로이 제호로 사용하면서, 표지 4면 4도 인쇄, 본문 28면 흑백인쇄로 본격 32면 발행을 시작하였다.
- 2011년 3월 36면으로 증면발행을 시작하였다.
- 2014년 5월 화가인 이현혜 평생회원의 작품을 표지에 담기 시작하였다.
- 2016년 1월 원로 가족법학자인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친필제호를 사용하기 시작 했으며, 통권 400호로 12월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世界 平和의 문턱에서

李 兌 榮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지극히 소박한 소망으로 가정법을 상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의 소망은 결코 누구의 관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속에서 韓國女性的 끈질긴 삶의 태도를 지켜 相談所를 꾸려온 결과, 이젠 제법 살림다운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웃 사람들의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법이 가진 者에겐 自己保護의 방패가 되고, 없는 者에겐 두들겨 맞는 철퇴가 되는 모순을 알게 된 저는 특히 가난하고 無知한 우리네 女性에게 法の 惠澤을 일러 주고자 法の 生活化, 法の 庶民化 運動을 제창했습니다.

이러한 運動이 결국 反共運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世界平和運動까지 된다는 사실은 얼마 전 철늦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7월 22일 「유고슬라비아」에서 『법을 통한 세계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受賞對象이 「자연인 李 兌 榮」이 아니라 「韓國家庭法律相談所」임을 알았을 때, 나는 지난 15년간 상담소를 도와주신 많은 親知에게 이 기쁨을 어떻게 전달할까 걱정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相談所는 이 나라 모든 女性들의 相談所였건만, 그동안 살림에 쪼들려 서로 소식을 주

고발을 엄두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창간한 「가정상담」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한 편, 일손에 바빠 相談所를 찾지 못하시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相談役이 될 것입니다.

15년 만에 겨우 이렇듯 초라한 相談紙를 내놓았으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이젠 빠른 속도로 성장하리라 믿어집니다.

머지않아 매일 매일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相談紙가 되도록 힘써 노력할 생각입니다.

15년 전 단칸방에 차린 相談所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알찬 살림을 차린 것처럼, 이 傳單같은 「가정상담」이 또 다시 여러분의 성원으로 세계적인 家庭法律紙가 될 부푼 소망으로 創刊號를 보내 드립니다.

이제 國內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게 된 우리는 보다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충고와 협력이 「가정상담」을 통해 倍加되고, 여러분의 걱정들이 「가정상담」을 통해 해결되길 바랍니다.

(本所所長)

* 편집자 주) 1971년 10월 5일 발간한 <가정상담> 창간호에 실린 이태영 소장의 창간사 전문을 다시 실는다. 당시 국한혼용 및 맞춤법을 그대로 살려 썼다.

가정상담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모두 4면으로 1면에는 이태영 소장의 창간사와 기세훈 당시 서울고등법원장 겸 사법연수원장, 이숙중 한국여성단체협의 회장의 축하 그리고 주요한 소식을 실었다. 2면에는 김주수 교수가 본소 상담위원의 직함으로 쓴 논단 '부부의 재산적 독립의 이상과 일상가사 대리권' 그리고 통계와 가정상담 사건에 대한 소개를 실었으며 3면에는 국내 법률구조활동 내용 및 상담소의 지나온 역사에 대한 회고를 실었다. 4면에는 상담소의 연혁과 상담소 이사진, 역대 상담간사의 명단 및 상담소의 하루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정상담> 4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 주 수 가족법학자, 전 연세대 법대 교수

<가정상담>이 어느덧 통권 4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가정상담>이 처음 발간된 1971년부터 지금까지 약 4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가정상담>을 보아 왔기에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불행한 가정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상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태영 박사가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하였는데, 1963년 가정법원이 설립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가정법원의 구내에 있는 부속건물을 빌려서 새로 출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이 설립되면서 가사조정위원을 맡게 되어 가끔 가정법원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바로 법원 옆에 있던 상담소에 들러서 상담을 도와드렸던 일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 때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히 상전벽해와 같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개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족법개정을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상담>은 발간 당시부터 다양한 상담사례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법률지식에 목말라하던 많은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창구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법개정에 관한 전문자료를 꾸준히 게재하여 우리사회에서 가족법개정운동을 선도하는 기관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앞으로도 주어진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며,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길에 <가정상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요즈음 뿌리 없이 흔들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니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상담>의 존재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가정상담> 통권 400호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 상 훈 서울가정법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월간 <가정상담>의 통권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1년 10월 5일 창간호를 발간한 <가정상담>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기관지로서 지난 45년간 가족법 개정운동, 호주제 폐지운동, 한부모가정 양육비 법률구조 등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업내용을 대내외에 전파하고, 우리사회의 가정문제와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상담>이 걸어온 길은 우리사회의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 인권신장의 길이였기에 <가정상담>의 400호 발간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한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일이겠지만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을 볼 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 저감과 해소,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등을 위하여 이혼사건에서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조기에 만나 갈등 감소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 사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혼사건 조기개입모형을 실시하고, 다양한 후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분쟁 중인 당사자가 가족관계를 회복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우선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이혼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훌륭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비단 가정법원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전문가와 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바탕한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11. 3.부터 다양한 법률구조활동 중 하나로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출장상담을 시작하여 매일 2명의 상담위원이 하루 평균 48건의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노력은 우리 사회 법률복지의 기반으로써 가슴 아픈 당사자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과 사명감으로 법률구조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정상담> 통권 4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상 옥 한국가족법학회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정상담>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매월 발간되는<가정상담>도 이에 걸맞게 지령 400호를 간행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대단한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0호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가정상담>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197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기관지 성격으로서 출발한 <가정상담>은, 그동안 연간 발행, 연 2회, 연 3회, 격월간 발행을 거쳐 1986년부터 월간으로 간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이 간행된 지 벌써 45년이 경과하였다는 결코 짧지 않은 연륜도 소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상담>에 게재되고 있는 내용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상담>은 단순히 상담소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 각 부분의 사업내용을 전하고 전국 각지부의 소식도 전하지만, 더 나아가 직접 해결한 소송 구조 경과와 가정폭력상담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현황을 짚어보고, 국내외 법률구조사업의 현황과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파하는 등 현행법상의 과제와 제도의 문제점을 간파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집으로 꾸러지고 있는 사계 전문가들에 의한 묵직한 자료들은 단순한 수상문이 결코 아닙니다. 학술논문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현행 가족법상의 바람직한 해석론을 비롯하여 개선방안이나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가족정책 및 부부간의 심리 상담 등 상당히 폭넓게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발행되는 <가정상담>은 비록 그 면수가 많지는 않지만, 표지의 의미 있는 그림에서부터 말미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사법연수원생들의 실무수습 후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월 받아보는 <가정상담>을 통하여 소소한 이야기를 읽어보는 즐거움은 물론, 가족법과 관련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최근 지식까지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은 저 혼자만 누리게 되는 호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가정상담>이 지령 400호를 맞게 되지만, 앞으로 1,000호 아니 더 이상 계속 간행되면서 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과 남녀평등의 착실한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정상담>400호 발간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애 령 작가

현실요법전문가



그 동안 60년의 세월을 거치며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성장해 온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해 온 월간 '가정상담'의 400회 발간에 큰 성원과 박수를 보낸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알제리의 해안가 도시 '오랑'에서 무서운 병인 페스트가 창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견잡을 수 없이 사태가 번져나가자 정부는 오랑시 전체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곳에 갇혀버리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의사인 류는 묵묵히 페스트에 걸린 환자들을 보살피지만 오랑시를 취재하러 왔다가 발이 묶인 기자 랑베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쓴다. 신부 파늘르는 '페스트는 오랑시민들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설교를 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힘을 합치기 시작한다. 죽음의 공포 앞에 분열하고 무너지기보다는 하나가 되어 페스트에 당당히 맞서기로 하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가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동안 해 온 일이야말로 페스트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면서 페스트를 약화시키려고 분투하는 류가 한 일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상담소의 입장이 다른 사회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왔다.

상담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삶의 방향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필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보살펴 왔다.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존감을 되찾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준 것이다.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삶에 도전할 수 있는 방식을 유형무형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확인하는 일들을 수행해 왔다.

서울 어디에서든지 여의도로 가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만날 수 있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서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을 해온 '가정상담'은 어두운 바다에 등대의 불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꾸준히 맡아왔다.

앞으로도 월간'가정상담'이 풍파를 헤치며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변함없이 해주기를 기대하며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 을 이야기 한다 (6)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가족법이란 보통 친족법과 상속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우리사회의 변화가 이 두 분야의 법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II.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의 대응 및 과제

1. 배우자 상속분

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의 상속권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속제도의 중요한 기능³⁾으로 인정되었던 피상속인 사후 부양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며, 오늘날에는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자녀가 기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자녀의 상속권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배우자 상속분

2010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사별한 65세 이상의 부부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약 80%에 이른다.²⁾ 즉, 노후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여자노인이 생

*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가족법에 관해서는 본소의 가족법개정운동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특히 배우자 상속분과 유류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된바 있어 간략하게 소개한다.

존 배우자로서 남은 삶을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자노인들은 자기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³⁾ 결국 이러한 여자노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서 받은 상속재산과 자녀들의 부양뿐이다. 특히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상속재산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 반면에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여 경제력을 갖추고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현행법규정에 의하면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속구조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배우자에게 상속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자녀가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노후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많은 경우 아내)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라. 대안

(1) 배우자 선취분의 도입

(가)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경과
2013년 10월 법무부는 민법(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취지로 2014년 1월

개정안의 기본골격을 형성하였고 여론의 호응도 높았으나, 이른바 '기업상속'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입법예고에도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나) 개정시안의 요점

개정시안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는 전제하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생존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선취분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

개정시안은 선취분을 유증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선취분은 원래 배우자의 몫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선취분까지 타인에게 준다는 유언은 거꾸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방안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공유재산)으로 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⁴⁾ 이런 전제에서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될 때에도 부부사이의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청산하여 원래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논리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되어 왔다.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근친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데(법정상속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여 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사후에 유족의 부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사후 부양의 기능). 둘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의 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상속의 개시를 계기로 상속재산의 형성에 따른 기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잠재적 공유관계의 청산).

2) 통계청(kosis.nso.go.kr), 2014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인구동향조사 5. 혼인상태별인구.

3) 2013년에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은 비율은 37.6%를 차지하였다(그 중 33.7%가 국민연금수급자였다). 통계청, 고령자통계(2014).

적으로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2. 자녀의 유류분

(1) 자녀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검토

첫째, 오늘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인 자녀의 상당수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

둘째,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족은 생산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자녀가 부모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되었다.

셋째, 가족 간의 유대관계 그 자체에서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류분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2) 유류분 제도의 개정방향

(가) 유류분을 부양의 필요와 연계시키는 방안

(나)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유류분을 감축(또는 박탈)하는 방안

3. 상속결격 사유의 확대

4. 정리 및 검토

1. 1990년 민법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뿐 아니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할(청산)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현대사회에서 유류분의 부양적 기능은 점차 그 효용을 잃어가고 있어 가족관계 그 자체로부터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구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가족관계(혈연관계) 및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그와 같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배우자 상속분이나 자녀의 유류분에 대해,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키는 방법은 법률관계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III. 변화하는 사회와 친족법의 대응 및 과제

1.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이행 경향

(1) 기존의 학설과 판례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 논거로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무제한 인정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많은 경우 아내)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점(특히 배우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상실)과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가 이혼이라는 법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4) 대결 1993. 5. 11, 93스6,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헌재결 1997. 10. 30, 96헌바14, “경험칙상 혼인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소유명의는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제도는 바로 위와 같은 경우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한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2) 판례의 변화 - 유책주의의 완화와 파탄주의의 확대

(가) 2009년에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기초를 다소 완화하는 태도를 보인 판결을 선고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어서 2010년에 나온 판결⁵⁾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 남편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3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아내와 46년간 별거하여 오다가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원고인 남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법원은 2015년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아래(①, ②)와 같이 정리하였다.⁶⁾ 여기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보다 확대하였는데(기존의 판례는 아래의 ①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였는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더하여 ②의 사정이 있는 때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였다), 이는 결국 파탄주의가 관철되는 영역이 그 만큼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

③ 새로운 법리(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②의 법리)의 적용과 재판의 결과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⁷⁾

(3) 외국법과의 비교 및 정리

독일민법에서는 혼인이 파탄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가혹조항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이혼을 유예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 법으로 규정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현실은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의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되, 이혼이 미성년자녀와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입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이혼 후의 공동친권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혼 후의 공동친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혼 후의 보편적인 친권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법이 개정되어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혼 후 공동친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범위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처가 요망된다. 참고로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혼 후 공동친권의 모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주형(定住形)

부모의 일방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을 전담하는데 이 경우 이혼 전에 주로 자녀 양육을 담장했던 부모의 일방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와 자주 만나서 유대관계를 유지,

5) 대판 2010. 6. 24, 2010므1256.

6) 이외에도 판례는 다음과 같이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부부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

7) 편집자주)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자료집 참조

발전시키고,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양육자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 유형은 공동친권의 구체적 실현 형태 중 실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이혼 후 자녀가 겪는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진자형(振子形)

자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부모의 일방과 함께 지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모의 일방에게 이주하여 그 곳에서 다시 일정기간을 보낸다. 이 모델은 자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환경의 안정과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동에게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공동친권의 모델로 이용되는 빈도가 낮다.

다. 등지형

이 모델에서 자녀는 계속해서 동일한 거소에서 생활하며, 부모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자녀와 동거·양육한다. 이 유형의 큰 약점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양육형태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3. 자녀와 제3자의 면접교섭 문제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민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당시에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일방적인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자녀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2007년 민법개정에 의해서 자녀도 비로소 면접교섭권의 주체로서 인정되었으나, 자녀와 부모 이외의 제3자 사이에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개정 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 조부모, 형제자매 등 자녀와 유대관

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적 대처가 요망된다.

IV. 정리 및 결어

혼인관계의 불안정과 그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친족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파탄주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한계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혼 후에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남는 경우에 있어서 친권이 부모 쌍방에게 귀속하는 범위와 행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도 그 범위를 부모로 제한하지 말고, 조부모와 같은 제3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족법은 주로 변화한 사회현실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역할로 한다. 위에서 본 내용도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사회현실이 먼저 변화하고 그에 대응하여 가족법이 개정되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유지될 경우, 법제도로서의 혼인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향력도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맺어지게 된다고 보면, 전통적인 혼인제도 밖에서의 다양한 결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가족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또 다른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8) 수원지결 2013. 6. 28, 2013브33은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형제가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형제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였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에서도 2016년 2월 조부모와 손자녀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심판을 한 바 있다.



나를 먼저 긍정하고 관계회복에 나서도록 - 올바른 몸과 마음의 대화를 위해 -

- 일 시 : 2016년 11월 19일 ~ 20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20쌍과 자녀 22명을 포함 모두 62명
- 강 사 : 류분순(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교수, 한국댄스테라피협회 회장)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부부갈등문제 진단 전문상담가)
김정희·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상담위원,
최정아 선생님 외 자원봉사자 6명

I. 프로그램

1. 개회식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및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하였다.

2.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류분순 교수는 결혼생활의 바탕은 스스로가 행복한 것인

데, 자신을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외롭고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면서 이때 올바른 호흡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호흡법을 알아보았다.

(2) 몸의 긴장풀기

1) 올바른 호흡하기

허리를 똑바로 펴고, 갈비뼈 안쪽으로 손을 대고 갈비뼈가 안쪽으로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코로 숨을 깊게 쉬고, 숨을 끝까지 입으로 내쉬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의 올바른 호흡 방법이다. 자극을 받으면 열 번 정도 호흡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세 번을 호흡하고 나서 나에게 자극을 준 상대방에게 “왜 그래?”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평소 늘 같



은 패턴으로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스스로의 선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판단해 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호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부부가 함께 긴장을 풀기 위한 활동

신발을 벗고 부부가 함께 긴장을 풀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몸을 회복하고 정서적 소통을 위한 활동으로 배우자의 등 뒤에 서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손을 이용하여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손을 맞대거나 등을 맞대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걸어가면서 자기 내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3) 뽀글 춤

‘손을 쥐었다 폈다’ 4번, ‘팔로 옆구리를 치는 행동’ 4번,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 4번, ‘손뼉으로 박수치기’ 4번을 한 세트와 음악과 함께 반복적으로 춤추는 활동을 하면서 부부끼리 마주보고 서로에게 인사하였다. 이 때 팔은 마음대로 하되 넓은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참석자 부부 모두 노래와 함께 춤을 추면서 크게 웃고 즐거워하였다.

(3) 부부간의 대화

1)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 이야기하기 = 듣기 연습

부부가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부 중 일방이 “나의 이러한 성격이 내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듣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대답을 하는 등의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가슴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

체만 듣는 하나의 듣기 훈련으로, 본인의 감정을 섞지 않고 들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손을 들어 표시하고, 반대로 진행한다. 결국 이 활동은 듣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패턴을 만들기 위한 연습으로, 연습을 통해서 타인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행동했다며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어땠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몸으로 대화하기

대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가 아닌 언어 뒤에 있는 상대방의 본심을 읽어야 한다. 문제는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결국 나 스스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자신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놀이성, 창조성, 자발성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먼저 놀이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았다.

먼저 남편은 눈을 감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아서 어느 공간이든지 끌고 가서 남편의 몸을 이용하여 조각을 만든다. 표정, 자세 모든 것을 아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만든 조각은 본인이 똑같이 모방해야 하고, 다 되고 나서는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조각에 대한 답을 한다고 생각하며 동작을 취해본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은 만지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은 두 사람 모두 조각 상태로 멈추며 동작을 마무리하였다.

3)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발을 모으고, 두 손을 배꼽 위에 올리고, 호흡을 깊게 한다. 나를 중심으로 원을 크게 천천히 그린 후,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땅에 대고 천천히 예를 다해서 상대방에게 절을 하고 일어나서 다시 90도로 천천히 허리를 굽힌다. 그리고 두 걸음 정도 앞으로 천천히 가서 상대방에게 ‘고맙습니

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머물러서 호흡을 깊게 한다. 마지막에 자신에게 이야기 하듯이 ‘내가 잘 살고 싶듯이 당신도 잘 살고 싶음을 압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듯이 당신도 사랑받고 싶음을 압니다. 내가 믿고 싶듯이 당신도 믿고 싶음을 압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당신도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두 걸음 뒤로 가서 처음 자세를 취한다. 이 과정을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비켜서서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리고 왼손을 손등 위에 올려서 자신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르며 스스로를 토닥토닥한다. ‘내 이름(누구야) 괜찮아. 열심히 살았어. 나는 유연하다. 나는 인내한다. 나는 배려한다. 나는 친절하다. 나는 웃는다. 나는 함께한다. 나는 협동한다. 나는 따뜻하다.’라고 말한 뒤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마음으로 꼭 안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면서 모든 활동의 끝을 맺었다.

(4) 소감 및 마무리

참석자들은 몸으로 대화하면서 소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류분순 교수는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지금, 현재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첫째 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3. 둘째 날 오전강의

(1) 사랑 한 뼨, 행복 한 움큼

1)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말이야

이서원 소장은 지금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노상황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고 권유하였다. 첫 번째,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분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화를 내는 원인은 인정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지 않기 때문에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분노를 바라보는 세 가지 단계에 맞춰서 자신이 배우자에게 화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도록 하였고,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모둠을 이루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당신에게 원한 건, 나에게 원한 건

분노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므로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적어보고 부부가 서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기대를 통해 형성되는 배우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준이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화가 나고, 결국은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하며, 상대가 원하는 것은 역사가 있음(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형성된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영·유아 프로그램

▶ 강사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보육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안녕! 반가워~’ 활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집단 내 규칙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공동 활동에서 스스로 질서를 따를 수 있게끔 하였다. 이는 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 빈번히 자리를 이탈하였던 아이들이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된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서 ‘나를 보여줘’, ‘다함께 모여라’, ‘알록달록 탕탕 점토’ 등의 활동을 했다. 둘째 날에는 ‘또 다른 나’ 활동에서 나만의 가면을 만들면서 몰입도와 창의성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었고, 가면을 완성한 후에 ‘가면 무도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가면을 만들었는지 설명하면서 창의적인 자기표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밖에 ‘오늘은 내가 건축가!’ 등 다양한 신체 및 미술활동을 통해 참석한 영·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방어 또는 경직된 자아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 강사 : 김정희(미술심리치료전문가)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집단원간 서로 소개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만의 공간 꾸미기’ 활동에서는 깃발에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그리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미술 활동을 거부했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경직되었던 아이들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둘째 날에는 ‘가면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벼운 신체 놀이를 하면서 각자 꾸미고 싶은 가면을 만들며 내면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었고, ‘우드락 놀이’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대상을 우드락에 그린 후 이를 부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구성해보았다.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였고, 자기 작업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신체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II. 정리

참석자들은 일상적인 패턴으로 대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 역시 훌륭한 대화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나 자신의 긍정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경직되었던 몸이 이완되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궁극적으로 내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회복되어 상대방에게 흘러넘쳐가기를 기대해본다.

차연실 상담위원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8강**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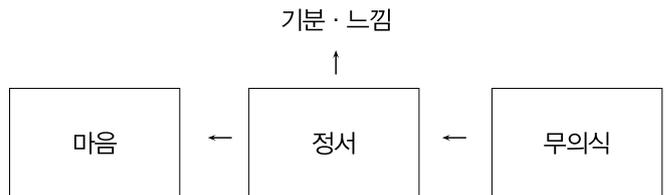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오늘은 어떻게 불공평한 관계를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가정적 이론 중에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면 사람은 그 무의식으로부터 받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는 뇌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의식으로 무의식을 인식해도 고통은 계속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뇌과학은 발전하는 영역입니다.

이제는 MRI로 사랑의 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MRI로 영상을 찍으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뇌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지치료, 행동 치료 등의 상담기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상담에서도 배우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느냐는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과거의 익숙해진 행동을 고착화되었다고 느끼기에 현재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부부 상담을 할 때에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다루는 인지, 정서, 행동 등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

다면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마음의 실체란 무엇 일까요? 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마음에는 지식이 그다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보통 '○○가 싫다, ○○하고 싶어, ○○ 때문에 기분 나빠, ○○ 이 째 째해' 등 정서를 나타냅니다. 프로이트는 정서가 무의식에 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정서가 마음의 실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체가 정서를 가지고 느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강의하러 여기 온 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부과되는 여러 부정적인 정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동물도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곳을 찾는 등 좋은 정서를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는 행동을 합니다. 정서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복잡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좋고 싫음 뿐 아니라,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고 싶은 것 등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정서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서에서부터 대부분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정서는 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먹지 않으며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하면 졸린 느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의 일부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목말라서 물을 찾는 행동. 불안해서 긴장한 표정을 우리는 행동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뇌가 인식하면 그것은 인지가 됩니다. 즉 의식수준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서는 의식에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의식에 떠오르는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느낌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인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인지는 행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지는 개체 스스로 알고 있고, 이를 말로 표현하면 타인에게 그 존재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상대는 나의 배고픔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화 하지 않아도 정서의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배고픈 표정을 짓는 나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유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감정을 느끼고, 느낀 감정을 인지가 되어, 말로 표현되어 진다면 다른 사람과 마음의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위로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정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교정하는 것으로서, 스키너와 같은 학자들이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들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동물들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을 통해 비둘기 두 마리가 탁구를 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네트를 만들어 공을 던져주며 부리에 공이 맞아 네트를 넘기는 경우만 먹이를 줍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무수히 반복되면 비둘기는 먹이를 먹기 위해 부리로 공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비둘기를 따로 연습을 시키고 공을 던져주면 훈련받은 비둘기가 탁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키너나 행동주의 요법에서는 이러한 원리로 인간의 행동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는 원리로써, 이것이 행동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처럼 행동 수정이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 치료는 행동의 문제를 가진 많은 환자의 고통을 치유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등장한 것이 인지치료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자신 없고 유약한 행동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실제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 선수가 실제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러 웃음으로써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웃음치료도 이 같은 원리의 일종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의 교육받은 웃음이 실제로 고객들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지치료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현실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한 방향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일입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출현합니다. 그 정서가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의 일부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인지입니다. 그래서 인지를 '내면화된 행동'이나 '언어화 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행동은 정서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알아내는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표정을 복제하여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감정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한 가지 특정 기분을 느끼도록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매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순간의 특정 기분입니다. 이 특정 기분이 바로 정서인 것입니다. 정서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정서가 배경정서입니다. 배고픔, 축축함, 졸림 등과 같은 몸의 상태의 결과로서, 정서의 근간 기저를 구성합니다. 즉 몸의 상태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했다고 합시다. 동물이 자신의 몸을 움

직이지 못하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상태로 인식합니다. 인간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 시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의 공포는 우리의 뇌가 공간에 갇힌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몸의 상태는 우리의 기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나오는 정서입니다. 이를 일차 정서라고 합니다. 일차 정서는 정서를 느끼는 개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동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혼자 세상을 살아 갈 때의 상태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먹이를 구하면 기쁠 것이고, 그 먹이를 잃으면 슬플 것입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불안과 공포가 나올 것이고, 갑자기 모르는 것이 튀어 나오면 놀랄 것입니다. 썩은 물은 혐오를 느끼게 하고, 밧에 걸리면 빠져 나오기 위해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 슬픔, 놀람, 공포, 혐오 그리고 분노 등의 6가지 감정이 일차 정서입니다.

3번째 단계는 사회적 정서입니다. 사회적 정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부터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감정 중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억울함, 수치심, 그리움, 애잔함, 질투와 같이 사람들 관계의 결과로 나오는 감정입니다. 배경정서를 바탕으로 일차 정서와 사회적 정서가 합쳐서 그 순간의 기분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그 기분과 느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느낌을 의식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를 의식화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러면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출근길에 느끼는 감정, 가족들과의 감정 등 다차원적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감정들의 합이 늘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서가 우울하거나 부정적이라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이 어떤지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몸의 상태, 세상과의 감정, 외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총합입니다. 이를 통해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친구와 다투고 난 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직접 친구에게 전화해 설명한다든지, 다른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상처를 완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이전의 정서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는 생존을 위해 행하게 됩니다.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와 특정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의식을 집중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게 하는 힘은 행위 전의 정서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생일에, 남편이 선물을 주면 기분이 좋고 잊고 넘어가면 나쁠 것입니다. 그런 기분을 느낀 아내의 태도에 따라 남편의 정서는 결정될 것입니다. 남편은 그 정서에 따라 다음 생일 날 어떤 행위를 할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뇌는 우리들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분이나 느낌의 형태로 개체가 느끼도록 하여 다음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는 왜 만들어질까요? 사람마다 각자의 마음이 있어, 각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는 다 그 시점에서 하고 싶은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족이 되고 사회를 이룹니다. 같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그럴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결과 부정적인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관계에 따라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썸을 타다가 사귀기로 하는 순간 서로에 대한 의무는 바뀌게 됩니다. 썸을 타는 동안은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귀기로 한 이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로 치부됩니다. 관계의 의무가 극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관계의 의무는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깊어지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귄 때는 상대의 부모에 대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 부모의 생일을 잊거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공격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사귄 때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결혼을 하면 살림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만들어 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의무는 위에 열거한 뚜렷이 보이는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 작동됩니다. 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의 마음이라는 것도 각자의 사람들의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아픔을 중요시 하고, 어떤 이는 특정한 디자인의 물건을 갖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기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마음의 세계를 단순히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과 같은 단순한 말로 전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바라는 상대에 대한 관계의 의무가 어떤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모든 관계에서 작동합니

다. 그리고 상대가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관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한 적은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이뤄지면, 관계의 의무는 그 시점에서 작동됩니다. 그 친밀한 정도에 따라 서로가 가지는 의무와 권리가 각자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은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는 갈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일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사랑할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양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답은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고 소통하여 사회적 동물이 되면 자연계에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곤충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회성 곤충인 개미이고,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보다 잘 살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서로 연합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연합능력을 통해 현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관계로 돌아가서,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관계의 의무는 쌍방향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갈등은 사람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날 시부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시누이가 오는 것을 보고난 후 친정에 가는 것을 바랍니다. 가족끼리 명절 날 하루라도 얼굴을 봐야 유대감과 결속감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이 되면 이는 너무 억울한 일이 됩니다. 본인도 친정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부모의 말을 따라 저녁을 같이 하면 친정에 가기 어렵거나 너무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딸은 점심 때 친정에 오는데, 시어머니 며느리는 저녁 늦게 나 친정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임에도 매년 반복되고, 어찌다 일찍 나오면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편치 않습니다. '어쩔 너는 그렇게 매물차냐? 조카도 보고 싶지 않느냐? 너는 그렇더라도 아이들끼리 만나야 친해지는데'

서로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의무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부모가 명절에 시누이를 보지 않고 친정에 가려는 며느리에게 '일찍 가서 서운하다'고 말했다면 며느리도 자신의 입장과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사 시부모가 며느리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쌓아두고 있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위해 더 낫습니다. 며느리가 말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마음속에 쌓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시가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 남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나쁜 의도를 갖고 나를 괴롭히는 경우보다 상대의 입장을 알지 못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도 자신도 대부분의 인간은 비상식적이거나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 사람입니다. 본인의 관점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수정해 나갈 때, 상대방의 반응을 감안하지 않으면 풀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삶의 많은 관계의 결과 만들어 지는 이런 감정들이 대부분 인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분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는 교정되지 못하고 그러면 갈등은 해소되지 못합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관계에서 부정적인 기분의 존재를 찾아, 그 이유와 기분의 실체를 인식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로 인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느낌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소멸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만일 그 강도가 심하다면, 그 때 느꼈던 기분을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제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축적되어 있다가 사소한 일을 계기로 폭발하듯 분출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큰 분노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그 분노에 기여한 잘못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참지 못할 정도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경우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는 인지, 즉 원인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지가 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만든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갈등이 충돌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인지는 의식에서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인지는 사라져도 그 감정은 무의식에 남아 있다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알려주는 것이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어 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만큼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기대가 높은 사람의 경우, 기대를 받는 당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가지는 의무의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상대방이 억울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왜 억울해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한 반면, 기대하는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만 비난하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관계에서 불공평하게 느끼는 감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없애야 할까요? 답은, '관계에서 갈등은 필요하다'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서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기만 하다가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불공평한 관계를 교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수고 많았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나 제수씨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아내만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외적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아내의 정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내는 이에 화가 나고 부부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의 어려움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말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의 어려움을 남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공평한 입장에 처해있을 경우,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은 이를 잘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보면, 일방이 성격 파탄이거나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 갈등이 깊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인지하여 잘 표현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표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표정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꾸중을 들으면 자신의 감정과 표정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면 행동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자율성이 떨어지고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이유는, 살아오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부모가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면 할수록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더라도 감정교류가 잘 될수록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감정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한 관계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선행됩니다.

니다. 생각이 매개가 되어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를 인지라고 표현합니다. 자동적인 사고를 만드는 데에는 일부 왜곡된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물건을 사러간 동안, 남편이 자동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게 되고, 아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아내가 남편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부부관계가 늘 이런 식이었다는 생각, 아내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다툼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결국 앞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는 사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으니 이를 묻는 과정에서 결국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말하고 상대의 피드백을 받아 교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늦은 이유에 대해 남편이 물어보았을 때 그 답이 남편을 생각하여 빨리 오려다가 넘어져서 늦었다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남편은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 과정 없이 지나치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도식이 뇌에 저장되어 유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났을 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도식을 막기 위해서는, 혼자 상상으로 왜곡된 인지를 상대방의 피드백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인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되면 극한상황까지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에서 이렇게 길고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혼자 단정 짓는 것과 같은 인지를 찾아내어 풀어가는 것인 인지적 부부 상담입니다. 인지 수정 전략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 등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인이 아팠던 동안 외도를 한 남편이 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힘들었던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던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럴 경우 이혼이 부인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 지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거리두기를 가정하고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5년 후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지 수정전략의 예입니다.

인지 치료 중 도식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을 치료에 많이 관여시킵니다. 단절이나 거절 등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던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행동을 현재시점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행동하도록 교육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식치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교육받으면 자랍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면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사회성도 좋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피폐해 집니다.

이럴 경우 자기주장을 못하는 불합리한 관계를 교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자기주장을 훈련을 시킵니다. 대부분 자기주장을 못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부인은 이 문제의 교정을 누구보다 바랄 것입니다. 부인의 도움을 받아 그 관계에서부터 자기주장을 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를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상사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당한 상황에서 정당한 자기주장을 하여,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게 단계와 상황을 조정합니다. 하게 되면, 변화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거절 공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클수록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가 없고 타인의 입장만을 중시하게 됩니다. 빚보증을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의 요구에 부모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너를 싫어 할 거야' 와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불합리한 요구에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관계를 고쳐나가는 것이 행동요법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사업을 하다가 부모를 내 현재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제가 상속을 받아봤자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갚는데 모두 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상속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상속인으로는 동생이 유일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만 동생이 온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수 있을까요?

Q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는 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받는 방법과 ②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의 행위들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하여 법원은, 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②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고, ③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므로,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동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월세보증금을 가지고 가출하여 13년간 소식을 끊은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법률구조 2016-27

담당 : 류수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등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4세)는 1999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8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후 사업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원고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또한 피고는 2002년경 부터 여성 투자자와 동업을 한다는 핑계로 외도를 하였다. 상간녀가 원고를 찾아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 피고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가 얼마 후 용서를 빌며 나타났다. 원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를 다시 받아주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살던 집의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달아나버렸다. 이후 피고는 잠적하여 현재까지 13년 동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6. 8.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친생추정기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소송

법률구조 2016-93

담당 : 권정호 변호사

사건명 : 친생부인

내용 : 원고(여, 27세)와 피고(남, 27세)는 2010년 9월 혼인하였으나, 2012년 3월경부터 별거하였고 2013년경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였지만 이혼조정을 2014년 12월에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의 별거기간 중인 2013년 6월경 소외 최00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여 그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2015년 1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소외 최00와 재혼을 하였다. 사건본인의 출생일이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내여서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있는 관계로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부인 최00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건본인의 신분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6.29.)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6-124

담당 : 채성욱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54세)과 피신청인(여, 47세)은 1991년 4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남, 24세), 사건본인2(여, 22세), 사건본인3(여, 18세)을 두었으나, 피신청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6월 이혼판결을 받았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09. 6월부터 2012. 2월까지 월 6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4. 8월까지 월 4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8. 9월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혼 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6.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지원 20**드 단****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과거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6. 7월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월 400,000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별거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혼인 상태인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6-149

담당 : 정용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4세)와 피고(남, 72세)는 1999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는데, 결혼 초부터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를 탐탁지 않게 여겨 지속적으로 횡포를 부렸다. 원고는 이 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친정으로 대피했으나, 피고가 설득하여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2000년 경 피고는 서류상의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0년 공공근로를 지원하였을 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였고,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피고와 서류상 부부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원고는 15년간 왕래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부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6.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불성실한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6-181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내용 : 원고(여, 31세)와 피고(남, 37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고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며 PC 게임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걸핏하면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친정아버지 얼굴에 타박상을 입혀 경찰을 부른 일도 있었다.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폭행하는 정도가 심해지자, 학교에서 언어치료와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여 기회를 놓친 적도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 속에서도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후에도 피고의 학대는 계속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서울가정법원 2016.6.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6.3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당 25만 원(합계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성립일 이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브루클린

감독 존 크로울리

출연 시얼샤 로넌, 에모리 코언, 돔널 글리슨



1950년대, 아일랜드의 소녀 에일리스(시얼샤 로넌)는 언니 로즈의 주선으로 미국 브루클린에 취직하여 먼 길을 떠난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며 언니처럼 회계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지만, 지독한 향수병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다가 주말 파티에서 만난 유쾌한 이탈리아계 청년 토니(에모리 코언)와 사랑에 빠지고 점차 미국 생활에 마음을 붙이게 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들려온 언니의 부고로 고향에 돌아간 에일리스는 그곳에서 진중하고 성숙한 매력의 짐(돔널 글리슨)을 만나 또 다른 사랑에 눈을 뜬다.

줄거리만 봐서는 지극히 단순하고 뻔할 것 같다. 별다른 것 없는 삼각관계, 엄청나게 극적인 사건이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시간대와 인물 설정, 아직까지 한국에선 낯설게 느껴

지는 젊은 배우들. 그러나 <브루클린>은 110분 동안 내내 시선을 놓아주지 않는다. 대사는 간결하고 장면은 함축적으로 구성된다. 인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과 그 순간 튀어나오는 제스처, 그때 인물들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 인물들 사이를 채우는 공기에 물리적인 언어가 실려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물의 감정을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말미에 이르러, 평범하고 가난한 소녀의 성장기가 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지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는 가족에 관한 보편적인 갈등이 대단히 미묘하고 섬세하게 녹아들어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던 언니 로즈가 동생 에일리스를 미국으로 떠나보낸다는 건, 당시의 결혼 적령기를 넘긴 언니가 아예 결혼을 ‘포기’ 했다는 뜻이다. 홀로 남은 어머니 옆을 지켜야 하는 것도 로즈이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것도 고스란히 로즈의 책임으로 남기 때문이다. 에일리스의 옷장에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외출복도 모두 로즈가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로즈는 미안해하는 에일리스에게 고개를 저으며 “난 네게 더 좋은 미래를 사줄 순 없었어”라고 한다. <빌리 엘리어트>에서 발레에 미래를 걸고 싶어 하는 어린 아들의 열망을 깨닫고 “쟤 천재일지도 몰라. 재한테 미래를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고 울음을 터뜨리던 빌리의 아버지와 <브루클린>의 로즈가 겹쳐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에일리스는 아직 로즈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아일랜드를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고, 뉴욕에 가서도 그녀가 새롭게 찾은 삶이 어떤 것인지 몰랐다. 그 안에 속해있을 때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난 다른 삶을 꿈꿔요”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에일리스는 그 ‘다름’이 무엇인지, 언니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에게 주고 싶어 했던 미래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결국 “있고 있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모종의 결단을 내린다.

에일리스의 선택이 어떤 의미에선 가족을 ‘배신’ 하는 것

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핏줄이나 익숙함, 공유해온 역사, 전통적인 무엇만으로 가족과 고향의 가치가 매겨질 순 없다. 자신의 의지로 '내가 좀 더 나답게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장소와 동반자를 찾는 순간, 그곳/그 사람이 나의 고향이자 집이 된다. 가족을 위해 내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인고의 여인상이라든가 핏줄로 연결된 대지에 뿌리내리는 민족주의적 감성에 얽매이지 않은 채, 그 어떤 선입견도 상쾌하게 파괴하며 기꺼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에일리스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을 성취한다는 쾌감을 안겨준다. 하나의 가족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브루클린〉은 2016년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 여우주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왜 저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16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심무순, 유문숙,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지후, 김태주, 김현임, 박수열, 박은정, 박은주, 송명호, 이승주, 이지선, 전현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김소이, 김진아, 방선영, 배선경, 임주용, 장주용,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학생 자원봉사

강은영, 김소희, 김수민, 박주연, 백다슬, 신수현, 윤혜정, 이민주, 이현지, 이해진, 장윤서, 전승민, 전유진, 정주은, 황지혜, 곽민주, 이경민, 김수정, 김우람, 김주영, 김현지, 손서영, 손준호, 여에스터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김진아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박은정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상담소 소식



2016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17년도 사업계획 등 검토

상담소의 2016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4일 열렸다. 김춘봉, 박양덕, 김의재, 조대연, 임재연, 김영옥, 김명순, 곽배희 이사 및 한미영,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관련사진 2면)

자원봉사자 정기모임 및 재교육

본소는 지난 11월 10일 전화상담 자원봉사자(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심무순, 유문숙, 한정희)의 재교육 및 점심을 겸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재교육은 전화 상담을 하면서 궁금했던 상담사례에 관한 스테디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조은경 상담위원이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점심모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곽배희 소장, 이해숙

총무부장,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 제2부장, 이숙현 출판부장, 조은경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지부위원회 개최

11월 24일 본소에서 지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곽배희 소장이 위원장으로 진행한 이날 지부위원회에서는 광주YWCA가정상담센터(전 광주YWCA가정법률상담소)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하고, 거제지부를 인증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부위원회는 차명희 이사장과 김명순 이사가 위원으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복미영 상담위원이 간사로 참석하였다.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11월 24일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외도의 유형과 대처”라는 주제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47명이 참석하였으며,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사례를 통해 성별과 외도의 원인에 따른 외도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대처방법도 함께 강의하였다. 또한 외도와 관련하여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의심과 망상장애인 의처증·의부증과의 차이, 의처증·의부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처에 대해서도 강의가 있었으며, 강의 후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본소 박양덕 이사, 한수자 고문 운영후원금 기부

본소 박양덕 이사 그리고 상담 자원봉사자로 오랜 기간 봉사해온 한수자 고문이 운영후원금으로 각각 5십 만 원과 1천 만 원을 기부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정근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출장법교육

11.16. 포항시 가족관련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9일 한국사법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연구수요조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양육비산정기준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11일에 법무부 2016년도 제2차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고, 16일에는 경찰청 「4대 사회약」근절 2016년 하반기 정성평가회에 참석하여 평가하였다.

곽배희 소장, 홍보 관련 회의 및 소송구조 업무 점검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1월 2일 상담소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 대행사 ‘베리 모멘트’ 최성희 상무와 2차 회의를 열었다. 25일에는 소송구조 사건의 진행 점검을 위한 변호사 법무관 회의를 가졌다.



지부소식

강릉지부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총 5회(508명), 강릉시사업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총 4회(625명) 실시하였다. 11월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11월 14일, 15일, 21일, 22일,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김효경, 정이수, 장경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11월 10일 법원연계 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였다. 12일~13일 대구가정법원 연계 1박 2일 부부캠프를 구미금오산호텔에서 실시하였다. 12일, 26일 협의이혼의무 상담제지원사업으로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 를 실시하였다. 전종필, 김인현, 안혜림, 정익창, 이성림, 윤용원, 김영대, 정건진, 나만수, 정홍원, 상무균, 이정훈 변호사가 법률 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계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11회, 광주시법원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8회 실시하였다. 가정상담지, 상담소리플렛, 건강한가정만들기 전단지 등으로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등에 홍보물을 총 11회 배포하였다. 임상준, 정수경, 최유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으로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3회 실시하였다. 11월 3일, 10일, 24일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이동식 가정폭력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현명, 박지훈(성남), 양승철, 이상훈, 이정호, 임용호, 전태우, 최유나, 한승일, 홍성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익산지부

11월 23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11월 매주 수요일 저녁 가족법 강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부

11월 3일, 8일, 10일, 11일, 25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고, 7일 전주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검찰청 등에 가정상담지, 상담소리플렛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주지부

황인철, 박현민,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11월 17일~24일 주1회 북한이탈주민여성 13명을 대상으로 '행복토크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8일 청구역에서 상담소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김창건, 장상현, 박진석, 정수경, 임유정, 이동건, 이영주, 고정환, 이수희,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11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11월 8일, 22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고, 10일 창원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민태식, 강은실, 강재현, 전철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춘천지부

11월 2일 조운동 경로당, 4일 포스코 아파트경로당, 7일 화평경로당 노인대상으로 법률구조지원 및 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

2016년 10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10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120건으로 본부가 5,981건, 지부가 6,139건이었다.

본부는 5,493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263건·소장 등 서류작성 177건·소송구조 48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336건·화해조정 764건·소장 등 서류작성 22건·소송구조 17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49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9월에 비해 면접교섭권(2.0%→2.6%), 인지(1.0%→1.1%), 친생부인(0.9%→1.1%), 친생자존부(1.8%→2.4%), 입양(1.2%→1.3%), 혼인무효·취소(0.6%→1.0%), 부양(1.3%→1.7%), 유언·상속(6.0%→6.8%), 가족관계등록부(2.3%→2.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4.2%→4.9%),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49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58건(24.7%), 전화상담 3,912건(71.2%), 통신 및 인터넷상담 222건(4.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6년 11월 본부 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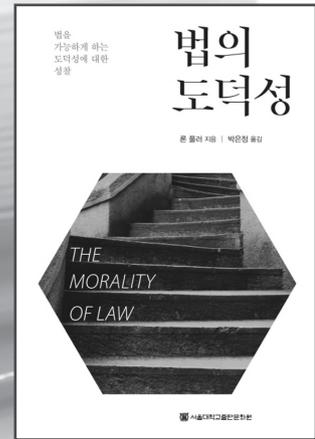
총상담 6,002			
법률상담 (5,471)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232	3,984	254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05		175	51

* 2016/1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9,763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5,981	1,358	3,912	222		지상 1	5,493	263	177	48
강릉 (033) 652-9555	75	50	18				68	2	1	4
거제 (055) 633-7636	350	344	6				350			
광주 (062) 672-6011	78	21	57				78			
구리·남양주 (031) 551-9976	196	73	62	4			139	56	1	
군산 (063) 442-1560	117	46	68				114	2		1
대구 (053) 745-4501	524	215	44	3		출장 105	367	157		
대전 (042) 520-5258	203	36	166				202		1	
제주 (064) 753-9421	157	32	122				154	3		
동해 (033) 535-0188	91	48	43				91			
목포 (061) 273-2514	105		103	1			104	1		
부천 (032) 667-2314	322	63	156	1			220	102		
성남 (031) 707-6661	311	190	78	2			270	38	1	2
수원 (031) 243-4600	425	158	145			출장 52	355	70		
순천 (061) 753-9910	176	68	94				162	11		3
충구 (02)2238-6554	327	202	122				324			3
안동 (054) 856-4200	81	10	35				45	36		
울산 (052) 246-9568	111	36	69				105		6	
익산 (063) 851-5113	268	76	182			출장 7	265		3	
인천 (032) 865-1120	291	159	114				273	17	1	
전주 (063) 244-2930	572	223	92	224	31		570		1	1
정읍 (063) 535-3705	106	37	61				98	7	1	
진주 (055) 746-7975	120	32	57				89	30	1	
청원·미산 (055) 261-0280	306	171	120	2			293	10	2	1
청주 (043) 257-0088	314	47	79	1			127	185	2	
춘천 (033) 257-4688	141	39	16			출장 49	104	37		
태백 (033) 554-4004	91	22	52			출장 17	91			
평택·안성 (031) 611-4251	94	29	64				93		1	
제천 (043) 644-5690	114	30	82				112			2
포항 (054) 283-7555	73	14	59				73			
지부총상담	6,139	2,471	2,366	238	31	출장 230	5,336	764	22	17
총 상담	12,120	3,829	6,278	460	31	출장 230 지상 1	10,829	1,027	199	65

**2016/10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07,788건

법의 도덕성



론 풀러 지음
박은정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나름 준법정신이 있는 시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때로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드리우게 한다. 일테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에 마음깊이 공감하게 될 때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는 표현은 또 어떠한가?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며 현행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재벌회장 아니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규모 있는 기업의 오너 또는 유명 정치인에 대한 구형이나 판결을 내릴 때 우리 검찰과 법원에 있는 법의 여신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고 확신하는 편이다. 헌법이 최고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모두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30년 전에는 최루탄 연기 자욱한 길거리에서 '호헌철폐' 를 외쳐야 했는데, 이제는 현시점에서의 '개헌반대' 를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할 지도 모를 시점이다. 하루하루가 불분명한 이 불확실만 확실한 불확실성의 시대!

이쯤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법철학자인 론 풀러(1902~1978)의 「법의 도덕성」을 읽는다. 이 책은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하필 이 시국에 이 책을 집어 들고 보니 '과연' 이라는 내 안의 냉소와 먼저 싸워야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이 법이기 위해서 존중되어야 할 기준' 을 제시하고, 그것이 '법의 내적 도덕성' 을 이

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과 법제도를 단지 질서유지와 분쟁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즉 법을 권위의 형식적인 원천으로 여기지 않고, 더 주체적으로 법을 유지해 나가는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 지점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반전으로 보였다. 거칠게 표현하면 '법이 내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이 '나는 혹은 우리는 법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경험이었다.

저자는 법을 근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기대로부터 나오는 소통적 질서 원리로 파악하여 법체계를 사람들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 내지 기획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을 '활동' 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목적을 지닌 모든 인간 활동이 그렇듯이, 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규칙을 익히고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법의 모습을 향한 열의, 통찰, 성실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한 번 정독하려고 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민주시민사회로 돌아가 있기를 바란다.

이 숙 현 편집부장



2016년 1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사전예약 필수)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이혼전 1단계 참여자, 사전예약 필수)
- ▶ 일시 :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2월은 휴강, 1월 9,23일 상담)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2017년 초 · 중 · 고등교사직무연수 모집

1.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2. 연수과정 구분 : 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3. 연수 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4. 대상 및 인원 : 서울 · 전국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40명
5. 연수 기간 및 시종 시간 :
2017.1.10.(화)~1.12.(목) 10:30~16:30(1일 5시간)
6. 연수 이수 시간 : 15시간(1학점)
7. 평가 - 없음
(연수과정 80%이상(12시간) 출석 시 이수증 발급)
8. 신청방법 - 신청서를 02-780-0485로 FAX전송 /
또는 이메일 전송(edu@lawhome.or.kr)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신청 기간 : 2016.11.1.~마감시 까지
(전화로 확인 요망, ☎ 02-782-3601)
10. 주요 과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 · 혼인 · 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 · 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 · 양자 · 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 · 유언 · 유류분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임대차에 관한 법률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폭력예방교육 등 강의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400



“〈가정상담〉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